

#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송선영 의원 등 7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송선영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본 제정안은 관내 문화유산을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홍보할 문화유산지킴이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‘문화재를 돌보고 가꾸는 문화’를 정착시키려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문화유산지킴이의 정의 (안 제2조).
- 문화유산지킴이의 활동대상 (안 제5조).
- 문화유산지킴이의 활동범위 (안 제6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, 관내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문화유산들이 방치되지 않고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“문화유산지킴이”를 지정하여 문화유산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주요 골자로는, 문화유산지킴이의 활동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의 범주를 정하고, 문화유산의 정화활동과 모니터링, 순찰 및 감시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문화유산의 자연적·인위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, 시민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우리 유산의 모습들을 장기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,
- 향후 지정된 문화유산지킴이들의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이 동반되어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관광진흥과장 채민우)

### 가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(소비자이익 저해 관련) 요청을 받아 공공캠핑장 사용료 반환 관련 조문 개선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- 관련법령
  -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
  - 「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 제8조(시설 사용료 및 반환 규정)

### 나. 주요내용

- 취소 시 예약자와의 갈등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귀책사유별 반환비율과 배상비율의 명시 및 천재지변의 기준 제시(안 별표 2).
  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 귀책사유 및 취소일자에 따른 배상 비율을 추가 하고, 천재지변을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명시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[별표 2]에 따라 화성시 공공캠핑장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정비하고,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검토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변경되는 내용과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[별표 2] 간에 상이함이 없고, 향후 시민들이 공공캠핑장을 사용함에 있어,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 사유 발생 시 불필요한 논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더욱 원활한 공공캠핑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이용운 의원 등 8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용운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본 개정안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- 이를 통해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려는 데 제안의 이유가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 (안 제2조).
-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 사업 (안 제20조).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21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 기존의 화성시 평생학습 관련 도시조성과 교육에 대한 사안 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학습과 교육의 명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범위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홍보, 교육 정보제공과 상담,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, 그리고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.
- 검토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교육 접근권을 제고하는 동시에,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설정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체육진흥과장 박재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 치: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(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)
- 용 도: (재)화성FC 사무실 이용
- 면 적

구분	당 초	변 경	비 고
건물연면적	165.10㎡	198.47㎡	33.37㎡ 확장

- 확장사유: (재)화성FC 사무국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
  - 상근 단장직 신규 임용
  - 프로리그 진출 대비 TF팀 신설 및 사무국 인력 증원 추진
- 감면비율: 100% 감면(무상 사용)
- 감면기간: 2024. 1. ~ 2028. 12.(5년)
-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  - 2023. 9. 2023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원안가결)
  - 2023. 11. 제22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사무실 전용면적 198.47㎡를 재단법인 화성FC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%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FC가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이용운 의원 등 8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용운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본 제정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-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·수집·처리하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의 한 내용인바,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증진에 입법 목적이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(안 제5조).
-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사업 등 추진사업의 범위 (안 제6조).
- 포상에 대한 사항 (안 제8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더욱 보장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사업·지능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·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사업과 사업의 위탁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,
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정보 접근권의 주체를 더욱 확대하고 알 권리의 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, 각종 정보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탐색의 기회 또한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
-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구성 등, 초기 발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이해남 의원 등 9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해남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스토킹은 반복성과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인 바,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·지원 대책이 필요함.
- 본 조례안은 올해 시행된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기초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회복적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스토킹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(안 제4조).
- 피해자 법률구조, 보호시설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, 최근 제정된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·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·심리상담·의료지원·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,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과잉접근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고 그 피해자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행위의 사각지대 일소와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,

- 화성시와 경찰 간 합동으로 구성되는 가정폭력·성폭력 공동대응팀이 본 사업을 주도할 예정인 만큼,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휘체계의 확보가 동반되어야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창업을 추진하는 화성시 청년들의 초기 자립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청년의 고용확대 등 변경 (안 제21조).
  - 창업 촉진 및 청년창업자의 육성 근거 마련 (안 제1항)
  -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4항 신설).
  -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및 위탁 근거 마련 (안 제5항 신설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년창업자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임차료·창업자금·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이며,
- 검토결과, 「2022 화성시 사회조사」에서 청년정책사업의 적합한 목표로서 ‘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 강화’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귀결된 사항에 발맞추어, 창업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음으로써, 경제활성화 측면에도 부응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1. 27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정책과장 이항순)

### 가. 제안이유

-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채무구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.
-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 치: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(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)
- 용 도: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- 면 적: 약 46.8㎡
- 감면비율: 100% 감면(무상 사용)
- 감면기간: 2024. 1. ~ 2028. 12.(5년)
- 수탁기관: 화성시사회복지재단
-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  - 2023. 9. 2023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원안가결)
  - 2023. 11. 제22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
  - 2023. 12. 사무실 사용료 감면 통보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전용면적 46.8㎡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수탁 예정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%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